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의 허가받”을 “허가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인가절차를”을 “인가절차 등을”로 한다.

3.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전송요구권”을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권(이하 “전송요구권”이라 한다)”으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3항제3호 중 “인정되는”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으로, “기간”을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 ④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한도를 비교·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13조의4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 철회 등을 보조·지원하는 업무
- 제15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행위를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를 “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수탁자가 위탁규정”을 “위탁규정”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조제14항제3호의 신용정보
-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발생일로”를 “발생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제 사유”를 “해제사유”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법 제20조제5항”을 “법 제20조제6항”으로, “영 제17조제8항”을 “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의5제4항의 기관”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제4호 중 “철회”를 “철회·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6.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정기적 전송 여부 등을 고의로 변경하는 등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7. 경제적 가치가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편의·물품 등(추첨 등을 통하여 제공할 경우 평균 제공금액을 의미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신에 대해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유도하거나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의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
 8. 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의 개발 및 주요기능 변경시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금융보안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 또는 같은 규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전담반”으로부터 서비스 보안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
-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분석·조사업무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정보전송을 지원하는 업무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
3.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권의 철회 등을 보조·지원하는 업무
4.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제28조의3제7항 중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2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은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받은 경우로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점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금융결제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행정안전부

제41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자”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를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경우”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3조의7 중 “제3항까지에서 “금융위원회”를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사항””을 “방법, 사항 및 내용”으로 한다.

제43조의9제1항제3호 중 “채권추심회사 자는 제외한다):”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3호 중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사항을”을 “제1호에 따른 전송 받은 점검 결과 및 제2호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

산재무제표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결산재무제표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사업연도말로”를 “사업연도말”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3조의3제1항제7호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6 제6호 중 “그 밖의 공공정보(특허권,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등)”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등(특허권,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등)”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4호 4.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법 제33조의2)의 4.6.2. 고지사항 등란 다음에 제4호 4.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법 제33조의2)의 4.6.

3. 정보주체 보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3. 정보주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 - 정보주체로부터 수집·이용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제3자에게 제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요구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보를 전송받는 자가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변경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

별표 6 제2호(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 및 법인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	------	------	------

		대상주체	등록시기	
가. 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				
신용 공여 현황 ¹⁾ (담보, 한도거래, 신용공여기간 등 포함)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 해당 기업 및 법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주채무계열 및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회사는 해당정보를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 영 제2조제18항제7호의 감사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보험계약대출 현황(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포함)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현황	은행(농·수협 포함)	○ 해당 기업 및 법인	위와 같음	○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 신용정보회사
나. 신용카드 관련 거래 정보				
신용카드현황(발급·해지 사실 및 이용·결제금액, 연체정보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위와 같음	등록사유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	위와 같음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 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사고 종결에 관한 보상 및 처리정보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코넥스소액전용투자계좌 관련 계좌 개설 및 폐쇄 정보 등	투자중개업자	해당 기업체	등록사유발생시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상품 발행, 매매 관련 정보 ²⁾ (거래일, 거래내역 등 포함)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해당기업 및 법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등록기관에 해당하는 자

주 1)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6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2의 신기술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기업 및 법인에 대한 정보 중 공공

목적으로 관리·활용되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정보에 한함

별표 8 I 제2호제3항 중 “원본정보”를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에”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중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중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심사 재개여부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심사가 중단된 경우 이 규정 시행일을 심사가 중단된 날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같은 법 제2조제8호의3나목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허가받은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5호 중 “은행연합회”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업 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③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나목”으로 한다.

④ 교역보험 취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 중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으로 한다.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신용정보기관”을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⑥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과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로 한다.

⑨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나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⑪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⑫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제2호부터 제10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제2호부터 제11호”로 한다.

⑬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나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본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⑮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의 개인신용평점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본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⑯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나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⑰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무허가를 받은 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나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로 한다.

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7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및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⑲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신용조회사”를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⑳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신용정보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78조제6항 중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로 한다.

㉑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㉒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겸영업무를 할”로 한다.

㉓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호나목 중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6호 중 “은행연합회”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 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㉕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3.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같은 법 제2조제8호의3나목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허가받은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2. (생략)

3.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⑦ ~ ⑪ (생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대상)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2. (생략)

3. 전송요구권의 행사에 따라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생략)

② (생략)

제11조의2(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①·② (생략)

③ 영 제9조제10항에서 “금융

⑦ ~ ⑪ (현행과 같음)

⑫ -----
----- 인가
절차 등을 -----
-----.

제5조의2(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대상)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권(이하 “전송요구권”이라 한다)---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4. (생략)

제13조의3(겸영업무) ① ~ ③

(생략)

<신설>

④ 영 제11조제6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2. (생략)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
를 중단한 -----

--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
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
시까지의 기간)

4.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겸영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
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
· 한도를 비교·분석하고 판매
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를
말한다.

⑤ -----

-----.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4(부수업무) ① ~ ③
(생 략)

④ 영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제13조의4(부수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 철회 등을 보조·지원하는 업무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① -----

-----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행위를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법 제33

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보호인
의 지정대상 등) ① (생략)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
용정보관리·보호인은 법 제20
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대표
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신용정
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
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
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연도 1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8호의3 서식
에 따라 영 제36조의5제4항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의 행위규칙 등) ① 영 제18조
의6제1항제11호에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보호인
의 지정대상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법
제20조제6항-----

----- 법 제26조-----

-----.

③ -----

----- 「민법」 제32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의 행위규칙 등) ① -----

1. ~ 3. (생략)
4.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요구를 즉시 철회하지 않는 행위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

----- 철회·변경-----

5. (현행과 같음)
6.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정기적 전송 여부 등을 고의로 변경하는 등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7. 경제적 가치가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편의·물품 등(추첨 등을 통하여 제공할 경우 평균 제공금액을 의미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신에 대해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유도하거나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의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
8. 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의 개발 및 주요기능 변경시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금융보안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

② (생략)

③ 영 제18조의6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에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생략)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특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 또는 같은 규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전담반”으로부터 서비스 보안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분석·조사업무를 말한다.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① ~ ⑥ (생략)
⑦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⑧ (생략)

제30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① ~ ③ (생략)
④ 협회의 장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분석·조사업무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정보전송을 지원하는 업무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

3.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권의 철회 등을 보조·지원하는 업무

4.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영제28조제7항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32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방식

3. (생략)

②·③ (생략)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①·② (생략)
<신설>

----- 지체 없이 -----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은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받은 경우로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점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금융결제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행정안전부

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① 법 제38조제2항-----

제43조의7(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영 제34조의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 ① 영 제35조의9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및 그 자가 법 제43조의3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그 최소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영 제35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영 제21조제2항제8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자는 제외한다): 5억원. 다만, 영 제5조제2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중앙회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신용정보처리 관련 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

제43조의7(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
-----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원회-----
방법, 사항 및 내용--.

제43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 ①

-----.

1.·2. (현행과 같음)

3. -----

----- 채권추심회사: -----

제46조(회계처리기준등) ① 신용
정보회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
표 작성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는 결산재무제
표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
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말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8조(재검토기한) (생략)

<신설>

제46조(회계처리기준등) ① ---

----- 관하여 「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제5조-----
-----.

② ----- 결산재무제
표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사업연
도말-----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
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23조의3제1항제7호는 20
2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
진다.